

<보도자료>

민변 한미 FTA 반대/ 한미 FTA 대안입법 촉구 / 농성 기자회견

□ 기자회견 진행 순서 및 내용

1. 기자회견 취지 및 경과 설명

류제성 민변 사무차장(사회)

2. 발언

발언 1 한미 FTA 반대 농성 이유(정연순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발언 2 FTA 대안법 제정 촉구 취지와 내용(박주민 변호사)

3. 기자회견문 낭독

김선수 변호사(민변 회장)

<기자회견문>

헌법에 위반되고 국익에 반하는 한미 FTA를 반대하고, 한미 FTA 대안법 제정을 촉구한다.

정부여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한미 FTA는 관세, 보건 의료, 식품 위생, 농업, 산업 정책, 독점 규제, 노동, 환경, 금융, 서비스 산업, 지식 재산권, 정부 조달, 사법 제도 등 국민의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는 방대한 통상 협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와 같은 한미 FTA 독소조항들은 우리 헌법과 사법시스템을 뒤흔들 것이며, 중소기업·골목상권 보호 등 경제민주화와 공공선 실현을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를 위협할 것이다. 우리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영리병원 허용 등으로 서민들의 삶도 냉혹한 시장에 내팽겨쳐질 것이다.

모든 협상은 비밀로 진행되어 어떤 것이 국익에 반하는지 따지지도 못하게 되었고 외교통상부는 협정문의 술한 번역오류에 대한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 등에 의하면 이 땅의 공직자들이 국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 앞 다투어 충성경쟁을 하고, 한미 FTA에 관한 협상전략을 노출해 왔음이 드러났다.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망각한 매국적인 행위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해명도 없다.

정부의 통상독재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미국의 일방적인 한미 FTA

그러므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심의를 중단하고 FTA 대안법을 제정한 후 이 법에 따라 정부가 한미 FTA를 재협상하여 상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회가 정부의 통상독재를 막고 우리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1. 10.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선수



<첨부 법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특별법안

--	--

: 2011. 10. .

: ()

한미자유무역협정은 관세, 보건 의료, 식품 위생, 농업, 산업 정책, 독점 규제, 노동, 환경, 금융, 서비스 산업, 지식 재산권, 정부 조달, 사법제도 등 국민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규정하는 방대한 통상 협정으로서, 협정문 및 관련 국내법령과의 불일치 문제가 국내법령 전 범위에 걸쳐 발생하고 있고, 협정문의 내용 중 헌법 제 60조 1항의 입법 사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헌법 제 6조 1항에 따른 법률적 효력을 부여할 경우 헌법에서 정한 국내법령 체계가 어긋나게 되는 문제가 있고, 미 합중국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미합중국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국내법과의 불일치를 해소

하고 헌법이 부여한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범위와 시기를 명확히 하여 국내법 체계 질서를 유지하고, 한국과 미국에서의 그 법적 지위의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건전한 국민 경제와 호혜적 한미 관계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헌법 제 60조 제 1항의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국회 비준 동의를 구하는 사유를 적시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한미자유무역협정과 적용 대상을 같이 하는 국내 관련법령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양립하지 못하는 상충법령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경우 한미자유무역협정 중 헌법 제 60조 제 1항의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법률 제 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헌법 합치성을 증진하고, 국내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며, 법적 안정성의 제고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미자유무역협정”이란 2007년 6월 30일 서명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2011년 2월 10일 서명한 「추가협상 합의문서」 및 그 개정협정을 말한다.
2. “관련 법령”이란 한미자유협정의 각 조항과 적용 대상이 동일한 법률, 대통령령, 부령, 그리고 고시 등 행정규칙을 말한다.
3. “상충 법령”이란 한미자유무역협정 규정과 양립하지 않은 법률, 대통령령, 부령, 그리고 고시 등 행정규칙을 말한다.

제3조 (경제주권의 보장)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제4조 (협정상 권익 확보) ①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국내 피해를 클 경우 협정 의무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국내 피해를 조사하여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미합중국 정부나 주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한국의 권리를 미국 내에서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분기별로 국회에 점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민족내부거래) 남북한 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국가 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하며,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남북한 거래를 국가 간의 거래로 해석하는 데에 원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 (헌법의 준수)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조항은 헌법 제123조에 따른 국가의 농업 보호 육성 의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그 어떠한 조항도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제7조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보고) 대통령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제출함에 있어, 헌법 제 60조 제 1항의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국회 비준 동의를 구하는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련 법령 목록의 제출) ① 대통령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련법령과 그 조항의 목록 및 관련 사유를 적시하여 해당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대통령으로부터 1항의 목록을 제출받고, 누락되는 관련법령이 없도록 국회법 제 37조에서 정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제9조 (상충 법령 목록의 제출) ① 대통령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상충법령과 그 조항의 목록 및 상충 사유를 적시하여 해당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 37조에서 정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항의 목록의 누락이 없음을 심사 완료하기 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제 10조 (한미자유무역협정문의 비준동의와 상충법령의 개정)

① 국회의장은 제 9조의 상충법령 중 헌법 제 60조 제 1항의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상충법률을 미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부합하게 개정하기 위한 일체의 법률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기 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본 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② 국회의장은 제 1항의 상충법률안 개정안이 모두 의결되기 전에는 한미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표결할 수 없다.

③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제 1항의 상충법률안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는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지 아니하며 상충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효력이 없다.

④ 한미자유무역협정 중 헌법 제 60조 제 1항의 입법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기에 성질상 부적합한 조항은 해당 상충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이 그에 부합하도록 적법하게 개정될 때에 적용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한미자유무역협정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시기는 제 2항과 제 3항의 상충 법령이 개정된 이후로 한다.

제11조 (협정이행의 상호주의 원칙) ① 미합중국이 이 협정의 이행시기를 이 협정의 발효시기와

다르게 하는 때에는 대통령은 미합중국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미합중국이 이 협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 협정의 규정에 위반되는 조치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은 미합중국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이행 상황의 보고) ①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구성하기로 한 공동위원회, 위원회, 작업반 등에서의 양국간 논의 내용을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법 제 37조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기간 이내에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국회법 제 37조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부칙) 이 법은 2011. 6. 3. 제출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